

● 제286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  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19. 4. 22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【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560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영실 의원 외 10명
- 나. 제안일 : 2019. 3. 29.
- 다. 회부일 : 2019. 4. 3.

#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.

##### 나. 주요내용

- ‘장애등급’을 ‘장애정도’로 용어를 정비함(안 제6조제2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

### 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장애인복지법)의 개정사항(장애 등급제 폐지)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용어를 개정(장애 등급→장애 정도)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으로써 체계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인바,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## □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배경

- **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,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 목적에 따른 서비스제공기준 마련**
- 장애등록 후 각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

☞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

## □ 장애인복지법 개정(2017.12.1.) 주요내용 (2019.7월 시행)

- (장애등급제 폐지) '장애 등급'이라는 용어를 '장애 정도'로 개정, **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**(법 제32조)
  - \* 중증장애인(1~3급) 기준 등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(~'18상)
-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 욕구·환경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\* 실시 (법 제32조의4)
  - \* (대상사업) 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
- (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) 사각지대 장애인 방문상담,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 실시(법 제32조의6, 제32조의7)